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영도구에서는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자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지원기간 : 2025. 6. ~ 2025. 11.

나.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사업자 (공고일 기준)

-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8~39세의 청년 창업자(1985년~2006년생)
- ▶ 5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 간 지원(최대 120만원 한도 내)
※ 신청월 기준 지원

라. 지원규모 : 29명(29명 선정 후 중도이탈자 발생 시 후순위자 추가 선정 → 추가 선정자는 지원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지급될 수 있음)

마. 지원방식 : 개인별 계좌로 지원금 지급(매월 20일 한)

- ※ 선정 후 매월 초 지원자격 유지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매월 5일 한)
- ▶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료 납부 내역,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자는 확인기간 내 해당 서류 직접 제출]

바. 지원중지 및 환수 대상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료를 지원받은 경우
- ▶ 지원기간 내 사업장을 타 시·도(또는 주민등록지를 타 시·군·구로) 전출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 ▶ 지원 대상 확정 후 포기, 휴·폐업하는 업체
※ 지원기간 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
-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2025. 6. 9. (월) 09시 ~ 6. 27. (금) 18시

나. 신청방법

- ▶ 영도구청 홈페이지 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게시판을 통한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게시판 위치 : 영도구 → 분야별정보 → 청년 →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다. 신청서류

서류명	비고
임차료 지원 신청서	인적사항, 사업자 정보 등
유의사항 확인·확약서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발급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배우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인의 사업 내역 증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임차료 이체확인증	이체일시, 금액, 성명(신청자 본인, 임대인) 등 표시
입금통장 사본	신청자 명의 자유입출금 통장(예금, 적금, 주식계좌, 압류통장 불가)
매출 증빙 서류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4년 기준)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2024년 기준)
	※2025년 개업자: 1분기 신용카드, 제로페이 판매(결제)대행 및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제출 [홈택스에서 해당 자료 조회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캡처하여 제출]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매출 환산액 적용 : 매출액/영업일X365일
위임장(공동대표인 경우)	수임인, 위임인, 인적사항 등 *해당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 증빙 서류 대체 목적 *선택 서류 ※미동의 시 해당 서류 직접 제출

3. 심사 및 선정

가. 심사기간 : 2025. 6. 9. (월) ~ 6. 27. (금)

나. 심사내용 : 신청 서류 및 지원 자격 적합 여부

※ 신청 서류 미비한 경우 심사기간 내 보완 기회 부여

※ 지원 제외 대상

- ①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 [공고-붙임 2] 참조
- ② 휴·폐업 중인 사업장
- ③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④ 중앙·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창업공간지원(임차료 등)을 받는 경우
- ⑤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⑥ 기타 부산 영도구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 선정기간 : 2025. 6. 30. (월) ~ 7. 15. (화)

라. 선정방법 : 적격자 대상으로 평가표에 따른 점수순 선정
(동점자 발생 시 영도구 소재 사업장을 우선 선정함)

마. 선정기준

- ▶ 연령,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등 지원자격 확인
- ▶ 모집규모 초과 시 평가표에 따른 정량평가

※ 동점자 발생 시, 영도구 내 사업장 우선 선정

바. 선정자 발표 : 2025. 7. 16. (수) 한, 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매출액	▶ 2,000만원 미만	50점	50점
	▶ 2,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40점	
	▶ 4,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30점	
	▶ 6,0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20점	
	▶ 8,000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10점	
월 임차료 (계약서상 차임 기준)	▶ 50만원 미만	20점	20점
	▶ 5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15점	
	▶ 7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점	
	▶ 100만원 이상	5점	
운영기간 (실개업일 기준)	▶ 3개월 미만	20점	20점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5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0점	
	▶ 1년 이상	5점	
점포규모	▶ 30㎡ 미만	5점	5점
	▶ 30㎡ 이상 ~ 60㎡ 미만	3점	
	▶ 60㎡ 이상	1점	
사업장 소재지	▶ 부산 영도구 내	5점	5점
	▶ 부산 영도구 이외 지역	1점	
영도구 시행 사업 참여 여부	▶ 대상 사업 : 2024년 영도 청년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사업/ 영도 청년정책 네트워킹/창업강연회 『스타트 영도』	5점	[가점] 5점
	▶ 대상 사업 3회 이상 참여 ※2024년 영도 청년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사업, 창업강연회 『스타트 영도』 사업은 각 2회까지만 참여 인정		
	▶ 대상 사업 2회 이상 3회 미만 참여	2점	
	▶ 대상 사업 1회 참여	1점	

4. 기타 유의사항

- 가.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나. 필요시 제출 서류 목록에 없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제출 불가

5. 문의처

-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 ☎051)419-4616

- 붙임 1.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서식.
2. 지원 제외 업종. 끝.

[서식1]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사업장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업종		사업자등록일	
	임차료		임차면적	
입금계좌	(은행명)			
영도 청년창업 관련사업 참여여부 (선택)	*영도구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 관련 사업(2024년 영도 청년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사업, 영도 청년정책 네트워킹, 창업 강연회 『스타트 영도』) 중 본인이 참여한 사업명과 참여일, 참여횟수 등 자유롭게 기술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_____ (서명 또는 인) ※ 서명 시 자필 서명 필수				
영도구청장 귀하				
※ 제출서류 : ①임차료 지원 신청서 ②유의사항 확인(약서) ③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④주민등록초본 ⑤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⑦임대차계약서 사본 ⑧임차료 이체확인증 ⑨입금통장 사본 ⑩ 매출 증빙 서류(일반·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⑪위임장(공동대표인 경우 해당) ⑫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관련 유의사항 확인·확약서

1.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전월 실제로 납입한 임차료에 대하여 이체확인증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 후 익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4. 중앙,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창업 공간 지원(창업기업 입주지원시설, 임차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본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착오·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발생하는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6. 선발자는 신청사항 중 사업장 및 거주지의 이전, 임대차계약 변경 등 어떠한 변경사항이나 지원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영도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7.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경우, 향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확약합니다 확약하지 않습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명 시 자필 서명 필수

영도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이후 동 사업 시행 시 중복 조회를 위한 참여 이력 관리, 정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창업공간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확인 등

2.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임차료임차기간 등의 임대차계약 정보,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업종 등의 사업자등록 정보 등	5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영도구, 타 지자체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영도구 시행 타 사업 참여 여부 확인(가점 항목), 정부 또는 타 지자체 시행 창업공간 지원 사업 중복참여 여부 확인 등

3.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1년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원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명 시 자필 서명 필수

영도구청장 귀하

[서식 4]

*선택 서류 : 공동대표인 경우 작성

위 임 장			
수임인 (대리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p>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25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영도구청장 귀하</p>			
위임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위임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위임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p>붙임 : 위임인(공동대표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까지만 공개하여 제출(예시 : 123456-7*****)</p>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단, 다음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6	보건업 *단,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